

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6월 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6월 11일

제1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석 태 룡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원평1구역 주택단지는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당해 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,
- 자력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□ 정비사업의 명칭 :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

□ 정비구역 및 면적

○ 위 치 : 구미시 원평동 330-2번지 일원

○ 면 적 : 58,636m²

□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(안)

○ 주된 용도 :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

○ 계획세대수 : 1,675세대(4,690명)

○ 건 폐 율 : 29.06%

○ 용 적 륜 : 447.58%

라. 참고사항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- 원평1구역 주택단지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통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
- 본 사업은 원평동 330-2번지에 위치한 면적 58,636m²(택지 44,242m², 공공시설부지 14,394m²)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인 바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며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시가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- 다만, 시가지 측과 고속도로 측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과 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의견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

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 건 서

□ 사 업 개 요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
2. 위 치 : 구미시 원평동 330-2번지 일원
3. 정비구역 면적 : 58,636m²
4.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
 -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, 준주거지역
 - 계획세대수 : 1,675세대(4,690명)

□ 주 요 내 용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통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것과
- 더불어, 기 추진 중인 원평동 3개 지구 정비구역과 연계하여 도로 및 제반사항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향후 도심지역 교통흐름에 원활을 도모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가지가 활성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